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문교
보사위원회
(2000년 4월 27일) 상정·의
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남일 교육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2000학년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3교 신설, 고등학교 1교 위치변
경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초등학교 3교 신설
- 서울창립초등학교, 서울신기초등학교, 서
울일신초등학교
- 고등학교 1교 위치변경
- 수도여자고등학교
- 초등학교병설유치원 1개원 신설
- 서울신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1일 개교예정
인 초등학교 3개교 및 병설유치원 1개원과
고등학교 1개교의 위치변경을 위하여 조례
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설, 개원되
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시설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교사배치, 교구준비 등 개교·
개원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학생 및 학부
모, 교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7
----------	-----

2000. 5.
문교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
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임시회 제4차 문교보
사위원회
(2000년 4월 28일) 수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 령 문화관광국장)

가. 제안이유

- 최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활동영역도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자원봉
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근
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건설에 기여하고, 아울러 월드킵축
구대회 등 각종 대규모 행사 등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새서울자원봉사센터 설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의 대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내지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주
간 설정·운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현저
한 공로자 등 포상 실시 및 자원 봉사활동
경력자의 취업·임용·진학시 성적반영 권
장, 자원봉사활동시 발생시 우려되는 재
해·사망 등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또는
가입지원 등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정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문
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2조)
-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센
터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종전의 사무처
리 행위 등을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총 평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참고
하여 최근 시민사회의 성숙과 특히 2002
년월드킵축구대회를 앞두고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권장·지원을 서울특별시 시장의 책무로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자원봉사자 보호·관리, 자원봉사자 포상, 자문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동안 시장방침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어오던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이 미제정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 새서울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11월 1일 「새서울자원봉사2002시민연대」 운동과 연계하여 문화월드컵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사무국 내에 설치하여 현재 계약직 공무원 3명과 일반직 공무원 1명을 포함 4명을 파견하여 센터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음.

이와 같은 자원봉사센터는 설치근거가 불충분하고 운영주체와 센터의 성격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서울시장이 직접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8조와 같이 필요시에 적정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이나 완전한 민간자율 운영이 아니라 현행 운영방식을 염두에 둔 임시방편적이고 작위적인 것으로 보임. 운영의 대행은 대리행위의 개념으로 서울시의 직영체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운영은 우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확대와 시민역

량을 결집·조장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직접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성숙한 시민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위탁하거나 완전히 민간화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조치와 관련하여

- 안 제9조 내지 제11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자원봉사주간 설정운영, 보험가입, 포상, 취업·진학에의 반영 권장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미흡하고 형식적인 방안에 불과 하며, 자원봉사 경력자에 대한 공직임용 등에서의 우대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자원봉사경력자에 대하여 취업 또는 진학시 자원봉사경력을 성적에 반영하도록 직장이나 학교 등에는 권장토록 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책무로 정하고 있는 시장은 채용·승진 등 임용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누락시킨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이는 본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모범이 조기에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가. 수정이유 :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은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개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

고 단체에만 적용시켰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함.

나. 주요골자 :

- 센터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 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방안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제4항)
- 등록 후 1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는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자원봉사단체로 한정(안 제7조제1호)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제24조”를 “제19조”로 한다.
- 제2조제2항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한다.
- 제9조 중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2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5조”로 한다.
- 제2조 본문 중 “7,369명”을 “7,278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7,351명”을 “7,26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
행으로 정원의 총수를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9조”로 한다.
- 제5조중 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8호 내지 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제12호 내지 제30호를 제14호 내지 제32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사회교육시설과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 7. 소속 공무원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 13.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초·중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 명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1중 초등학교(북부)의 서울오봉초등학교
란 다음에 서울창림초등학교란을, 초등학교(강
서)의 서울염동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신기초
등학교란을, 초등학교(성북)의 서울오현초등학
교란 다음에 서울 일신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초등학교(북부)

번 호	명 칭	위 치
56	서울창림초등학교	서울시 도봉구 창2동 412-4